

모방방화를 막기 위해 매스컴 보도 자체해야

흔히 방화(Arson)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는 공격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나 실제 범죄로서의 방화라는 행위는 여러가지 다른 동기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화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순전히 도구적인 행동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지는 계산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개인의 정신적인 불안이나 갈등을 반영하는 또는 그것의 발현으로써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범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의 경우가 순수한 범죄적 방화인 셈이다.

계산된 방화는 범죄로서는 폭파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다. 방화나 폭파나 대개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폭파는 화약이나 폭탄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데 반해 방화는 원시적인 것으로 폭파보다는 방화를 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연령적으로는 청소년 층에서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계산적으로 하는 방화, 즉 도구적인 방화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①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 ③ 절도 등 범죄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④ 원한을 풀기 위한 경우가 그것이다.

살인을 위한 방화는 실제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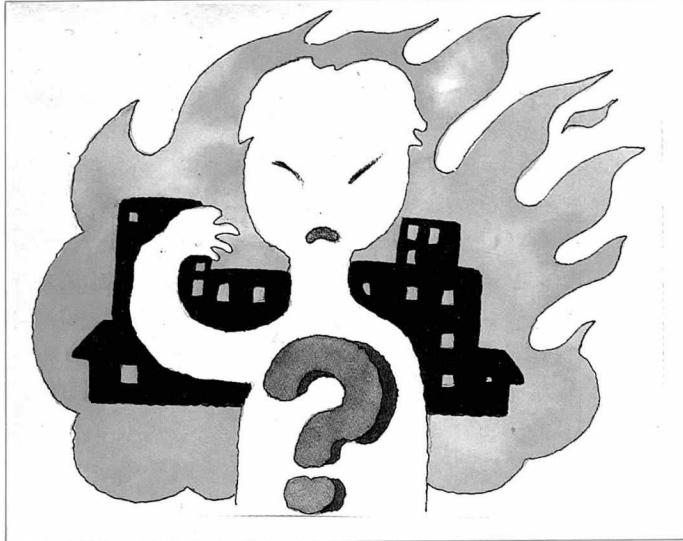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다. 재산상 이득을 위한 방화는 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인데 미국과 같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사업이 안되고 돈에 쪼들릴 때 보험금을 노려 방화를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방화에는 방화를 부탁하는 사업가와 실제로 방화를 하는 방화 하수인이 있다. 미국의 마피아중에는 방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이런 업체는 주문을 받아 방화를 하는데 보험절차까지 한 뜻에 처리해 준다. 1932년에 있었던 무당의 방화도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화의 한 예이다.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방화도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꾼을 쓰는 건축업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그 건축업자의

건설현장이나 건물에 방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절도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화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귀금속을 훔치고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한다든가 살인을 하고 난 후 살인현장을 없애기 위해 방화하는 것 따위이다. 이런 방화는 수사방향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도파적 성격의 방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폭동등의 경우를 제외한 보복적 방화에서는 단순한 분풀이 만이 아니라 다른 동기나 요인이 개입하기 쉽다. 이런 예로는 고등학교에 고용되어 있던 보일러공이 월급이 적은데 대한 분풀이로 방화한 경우와 또 자신의 잘못을 자꾸 타이르는 집안 어른에게 앙심을 품고 그 친척의 집에 방화한 중학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방화범은 대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지능도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디까지가 원한 때문이고, 어디까지가 성격상의 결함 때문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든다. 국민학교나 중학생이 성적표를 없애기 위해, 또는 나쁜 품행 기록을 없애기 위해 교무실에 방화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도 원한과 성격적 불안, 그리고 자신의 불리한 점을 없애려는 계산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정신질환이나 이상(異常) 심리에 의한 방화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옛부터 잘 알려져 있던 것이다. 「속이 활활 탄다」, 「화가 난다」, 「분노의 불길」 등 의 표현은 모두 불과 분노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 부류에도 다시 두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강박적 방화와 정신병적 방화이다. 강박성 방화자는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불을 지르고 싶은 강한 충동에 시달린다. 이런 강박성 방화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방화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장소는 별로 중요치 않다 강박적 방화를 하는 사람을 방화강박자라고 말하는데 심리학 방화강박증이란 이름이 처음 쓰이게 된것은 1883년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이 방화를 할 때 권력감과

성적쾌감을 맛본다고 본다. 적대감, 권위에 대한 반항심리, 그리고 무의식 성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일어난 어느 한 사례에서는 한 강박적 방화범이 4년 사이에 무려 130개의 공장, 창고, 기타 건물에 방화했다. 또 뉴욕시에서 일어난 어느 사례에서는 자정이 지난 2시간 사이에 6개의 아파트건물 복도에 연쇄적으로 불이 났다.

강박적 방화가 성충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정열의 불꽃」, 「사랑의 불길」 등의 말 표현에서 성적 충동이나 갈등이 불과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나오는 사건으로는 성빈반이란 사람의 계집종이 가는

집마다 불덩이가 굴러들어 불이 나는 연쇄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후 그 계집종이 애비모를 애를 뺐다고 한다. 그런데 애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귀신의 애를 뺐다 해서 귀태(鬼胎)라 불렀다고 한다. (이규태, 조선일보 90.2.8 일자) 사정으로 보아 이 방화의 주범이 바로 이 계집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덩이가 굴러들어 온 것을 보고한 사람은 바로 이 계집종일 것인데 방화범은 흔히 자신이 발견자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계집종은 성적인 충동 때문에, 즉 몸이 달아서 방화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강박적 방화자의 강박성은 미국에서의 예에서 엿볼 수 있다. 여러번 방화를 저질러 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어느 방화범이 최근에 벌인 방화에 대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 불을 질렀어요… 한번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 자꾸 하게 되죠, 그날 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불을 지르고 나선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늦죠.”라고 말했다 한다. 이런 말에서 방화범이 거의 무의식으로 방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병적인 방화로는 정신병적 우울증환자나 만성적 뇌장애자가 저지르는 것이 있다. 이 밖에도 알코올중독자가 취중에 저지르는

방화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개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도구적 방화와 정신병리적 방화 외에 좀더 재미있는 유형의 방화가 있다. 방범과 방화의 일을 맡고 있는 경비원이나 소방관 등이 저지르는 방화로서 이것은 불을 끄는데 영웅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화가 있기 때문에 화재를 신고하는 당사자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화재조사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작년 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연쇄방화 때에도 방화범으로 보이는자가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까지 울리고 달아난 경우, “여기서도 불이 났어요?”하면서 불을 끄는 시늉을 하다 사라진 청년의 경우, 또 불난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고 도망 갔다”라고 친절히 알려 준 경우 (이 경우는 그가 진범으로 잡혔다) 등이 보고되고 있어 범인들이 자신의 소행을 남이 보아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동에 사람들이 놀라고 바빠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범죄심리학에서 자극추구적 행동이라고 한다. 위의 보기는 방화범에도 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화범은 또 화재가 크게 되면 되돌아 와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미

국에서 자주 일어났던 방화유형으로는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가 집에 돌아가고 싶어 주인집에 방화를 한 경우인데 집이 타버리면 집에 보내 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형은 잘 생긴 소방관에 의해 구조받고 싶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유형은 성격으로 봐서는 계획적인 것이므로 도구적인 방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방화는 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방화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이 방화를 하는 동기나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동물 가운데 사람만이 불을 이용해 남을 공격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또 나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데 산다. 그런데 불이란 유익하면서도 잘 못 쓰면 바로 파괴 그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 오고 환경도 파괴시킨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방화를 방지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만 방화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사례별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험전문가만이 아니라 소방전문가와 심리학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방화를 영

업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정보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해 두고 계속 감시함으로써 방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움직이는 방화범이나 정신병리적인 이유로 방화하는 경우는 이를 예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전자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병리적인 방화범은 치료자가 방화 가능성을 점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연결만 되면 예방이나 방화 후 즉시 체포 등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다.

강박적인 방화범은 정신병리적인 수준의 병리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달라질 수 있는데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원한에 의한 방화가 주종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방화의 장소나 형태를 분석 해서 범인의 연령, 신분, 동기, 정신상태 등을 빨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방화의 수사는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 비슷한 범죄가 일어날 때 그것이 동일인의 방화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방화의 매스컴 보도는 모방방화를 유발시켜 수사를 어렵게 하므로 방화예방이란 측면에서는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